

전주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5가합1733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 4. 20 선고 2016나11344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5가합1733 판결

전 문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주식회사 C

4. D

변론 종결2016. 3. 30.

판결 선고2016. 6. 15.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22,559,850원 및 그 중 818,814,390원에 대하여 2014. 6. 2.부터 2015. 3. 17.까지는 연 12%의, 2015. 3.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31. 체결된

매매계약은 194,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D는 원고에게 19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보증금액 850,000,000원, 보증기한 2012. 10. 26.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C는 같은 날 위 약정에 의한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주채무 기한 연장에 따른 보증기한 연장에 동의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전북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두 차례 연장하여 보증기한이 2014. 10. 15.로 연장되었다.

라. 피고 회사는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2014. 4. 11. 전주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4. 6. 2. 전북은행의 요청에 따라 피고 회사 대출채무 원리금 전액인 822,869,700원을

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같은 날 피고 회사로부터 4,055,310원을 회수하여 위 금원에 대한 확정손해금은 1,333원($= 4,055,310\text{원} \times \text{약정이율 } 12\% \times 1/365$)이고, 원고는 위 구상금채권에 대한 채권보전비용으로 3,744,127원을 지출하였다.

바. 피고 회사는 2014. 3.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8,500만 원에 피고 D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3. 31.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피고 회사와 D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500만 원은 피고 회사의 피고 D에 대한 미지급금여와 상계하기로 하였고, 피고 D는 2014. 4. 1., 같은 달 7. 피고 회사의 계좌로 나머지 매매대금으로 2회에 걸쳐 4,000만 원씩 총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아. 피고 D는 2014. 5. 21. 현대캐피탈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3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자. 피고 회사가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한 회생신청서에 따르면, 2014. 3. 31. 현재 피고 회사의 자산은 19,947,000,000원이고, 채무는 37,316,545,000원이다.

차. 이 사건 부동산의 2015. 10. 23.경 시가는 194,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0의 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피고 B,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822,559,850원[$= \text{대위변제 잔금 } 818,814,390\text{원}(= 822,869,700\text{원} - 4,055,310\text{원}) + \text{확정손해금 } 1,333\text{원} + \text{채권보전비용 } 3,744,127\text{원}]$ 과 그 중 대위변제 잔금 818,814,390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4. 6.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5. 3. 1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인 2015. 3.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제2항, 구 특례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례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그 변화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4. 3. 31. 당시 피고 회사는 이미 채무초과상태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14. 4. 11. 피고 회사가 회생신청을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회사는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인 상태임을 인정할 수 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피고 회사가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D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피고 D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D의 주장 피고 D의 남편인 F이 1994년부터 피고 회사에서 헌신적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B의 인정을 받았고, F이 은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갚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되자 B은 2005. 10.경 F에게 피고 회사 명의로 경락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필요한 시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피고 D 명의로 매수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해 주었다. 이후 피고 D는 2014. 3. 31. 피고 회사에 매매대금 8,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매매예약에 의한 것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 D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원고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2) 사해행위 판단의 기준 올라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B이 F의 피고 회사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F에게 매도하기로 약속하였고 이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는 한 차례도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기재내용과 피고 D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 2005. 10.경 피고 D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만을 대상으로 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3) 판단 갑 제10호증의 1, 올라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8,500만 원으로 정해진 반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부터 불과 50여일이 지난 후 피고 D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F이 피고 회사에서 1994년부터 근무해 오면서 자금 및 회계부를 담당해왔고, 피고 D 부부는 B의 부친인 G의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B의 배려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해 온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D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남편 F을 통해서 피고 회사의 채무초과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시가에 현저히 못 미치는 가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며 사해행위라 하더라도 피고 D는 선의라는 피고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관련 법리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가액은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실제로 수수한 대가와는 상관없이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참조).

또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고, 이 때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므로(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등 참조).

2) 원상회복의 방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현대캐피탈주식회사를 권리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3)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액은 합계 1,049,988,349원[= 구상금 원금 822,559,850원 + 이자 합계 227,428,499원{= 77,798,583원[= 818,814,390원 $\times$ 289/365(=2014. 6. 2.부터 2015. 3. 17.) $\times$ 0.12] + 88,387,087원[= 818,814,390원 $\times$ 197/365(=2015. 3. 18.부터 2015. 9. 30.) $\times$ 0.2] + 61,242,829원[= 818,814,390원 $\times$ 182/365(=2015. 9. 30.부터 2016. 3. 30.) $\times$ 0.15], 원 단위 이하 버림)이다.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 10. 23.경 시가가 194,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도 위와 동일할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인 194,000,000원과 원고의 구상금채권액 1,049,988,349원 중 적은 금액인 19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와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19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H는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자인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9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봉규

판사김소연

판사정성화

별지